

2022년 하반기 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서대문구에서는 실업자 및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기회 및 생계 지원을 위해 「2022년 하반기 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2. 5.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신청기간 : 2022. 5. 16.(월) ~ 5. 27.(금) [10일간] 09:00~18:00
- 모집인원 : 175명 (청년·일반 151명, 고령 24명)
※ 청년사업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1982.7.1.~2004.7.1.출생)만 지원 가능
※ 고령사업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1957.7.1. 이전 출생자)만 지원 가능
- 사업기간 : 2022. 7. 1.(금) ~ 12. 20.(화) [5개월 20일간]
- 근 무 지 : 서대문구청 각 부서 사무실 및 현장, 동주민센터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대문구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억원 이하인 자
※ 가족의 범위 :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만30세 미만 미혼 신청자의 부모 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됨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서울시 안심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중복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필수사항 >

- 안심일자리사업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가족, 건강보험부양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 구직등록필증 (구청1층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발급) 또는 구직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 휴·폐업확인서 ("20.2.23.이후 휴·폐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인 경우 : 국세청 발급)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서 제출 (**해당자에 한해 반드시 본인 직접 제출**)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장애인 및 가족 등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

하는 서류 제출

○ 재산 4억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8.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 1일 시간당 9,160원 지급(식비 5,000원 및 주·연차수당 별도 지급)

- 5시간 근무자 : 46,000원, 3시간 근무자 : 28,000원

○ 근로조건 : 1일 5시간 또는 3시간, 주5일 근무원칙 (※ 사업별 특성상 토, 일요일에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9. 참여배제 대상 (안심일자리사업 접수일 기준)

- ▶ 접수시작일 이후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참여자이거나 중도포기한 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이 4억원 초과인 자**
 - ※ 가족의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 ※ 만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의 부모 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됨
-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가구**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
 - 소득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원 보험료 합산)
 -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참조 (하단)
-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1세대 2인 참여자**
-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의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 공공일자리 참여 부서에서 근무태도 불량, 불성실 근무자 및 민원을 야기했던 자
-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중위소득 70%)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2,282,000	79,783	31,047	80,371
3인	2,936,000	102,842	77,067	103,945
4인	3,585,000	126,039	120,425	127,461
5인	4,217,000	147,798	144,703	149,666
6인	4,835,000	169,210	172,486	171,393
7인	5,446,000	191,124	201,464	193,882
8인	6,058,000	212,712	229,170	216,279
9인	6,669,000	235,821	258,283	240,332
10인	7,281,000	254,658	281,796	260,234

※ 단, 1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10. **선발 기준** : 재산보유액, 가구소득,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취약계층 등 요소별 가중치 합산 고득점순으로 선발

11. **선발 발표** : 2022. 6. 24.(금) 예정

- 선발자는 구청 홈페이지에 배치부서 및 근로시간 게시
 - 선발 및 탈락 여부는 개별 문자 통보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 ※ 신청자 재산·소득 시스템 조회 등으로 일정이 변경될 경우, 개별적으로 문자 안내

12. **문 의** : 서대문구청 일자리경제과(02-330-1069)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 붙임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등 각 1부.
2. 2022년 상반기 안심일자리 사업 부서별 모집내역 1부. 끝.